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권*희	1971.08.23.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4년 4월 2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길142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남승지(Tel. 054-851-80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